

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2020. 4.



배지훈 의원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제안자: 배지훈 의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먼저,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달서구 주민의 안전증진과 안전도시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□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안 제6조제2항에는 안전도시 조성 사업 중 특화사업을 구체화하였고,
- 안 제6조제3항에는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.

□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

-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 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,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.

□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

-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배지훈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0082015
----------	---------

발의일자: 2020. 3. 23.
발 의 자: 배지훈, 김인호, 박종길,
김태형, 김기열, 이성순

1. 개정이유

- 달서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달서구 주민의 안전증진과 안전도시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안전도시 조성 사업 중 특화사업을 구체화(안 제6조제2항)
- 나.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(안 제6조제3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개정문 및 신·구조문 대비표: 불임 참조
- 나. 관련 법령 및 현행 조례
 - 1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조
 - 2)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」
- 다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라. 비용추계서: 비대상

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적합한 사업”을 “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사업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호”를 “호 및 제2항”으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사업의 범위) ① (생 략) ② 제1항의 사업 중 <u>적합한 사업</u> 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추진 할 수 있다.	제6조(사업의 범위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사업 등</u> ----- -----. ③ ----- <u>호 및 제2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제1항 각 <u>호</u> 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,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.	

【관계 법령】

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8. 6.>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,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12. 3.>

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,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와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2. 22., 2014. 12. 30., 2015. 7. 24., 2019. 12. 3.>

[전문개정 2010. 6. 8.]

【현행 조례】

□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편안하고 건강한 안전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"안전도시"란 안전·안심·안정된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합심·노력하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여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 예방을 위한 환경을 개선해 가는 도시를 말한다.
2. "안전도시사업"이란 제1호에 규정된 안전도시의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.

제3조(기본원칙) ① 대구광역시달서구(이하 "구"라 한다)와 주민은 안전도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, 이 조례에 따른 사항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지역공동체에서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안전 관련 기관·단체와의 상호 협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주민이 안전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,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본계획 수립·시행 등) ① 구청장은 안전도시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안전도시 조성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과 연도별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안전도시 조성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
2. 안전도시 분야별 실태 및 현황
3.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중점 추진사업
4. 지역사회 상호 협력기반 및 추진체계 구축방안
5. 기본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방안

6. 그 밖에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안전도시사업 추진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제반 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하여야 한다.

제5조(추진실적 평가)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안전도시사업 관련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6조(사업의 범위) ① 구청장은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(개정 2015.11. 2.)

1. 안전도시사업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조사 연구용역

2. 안전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3. 안전시설의 설치, 물품 및 설비개선 등 지원·장려에 관한 사항

4. 아동, 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심 귀가를 위한 안전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[신설 2019. 5. 21.]

5. 법질서확립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

가. 방범순찰, 폭력근절 등 범죄예방 및 치안질서 보조

나. 화재, 사고 등 각종 재난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활동 지원

다. 그 밖에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

6. 안전 관련 기관·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

7. 안전도시사업의 국내외 교류 및 활동에 관한 사항

8. 그 밖에 안전도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

② 제1항의 사업 중 적합한 사업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.

③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,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 (신설 2015.11. 2.)

제7조(안전도시협의회 설치) ① 구청장은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 관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.

제8조(협의회 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한다.

1. 안전도시사업의 발전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

2. 안전도시사업 관련 기관과의 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
3. 지역공동체의 안전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안전도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9조(회의 등)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실무위원회 구성·운영)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도시업무 담당국장이 되며, 간사는 안전도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.

③ 실무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안전도시사업 관련 구 소속부서의 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

1. 안전도시사업 관련 기관·단체의 실무부서의 장

2. 그 밖에 안전도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.

제11조(수당 등) 협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(개정 2013. 3. 4.)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